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4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심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3	임오경의원 등 11인	'25.12.10.	상정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 2.23.)
				소위 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3.26.)
	2216368	이학영의원 등 10인	'26. 1.27.	상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 3.24.)
				소위 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3.26.)
	2217656	조은희의원 등 10인	'26. 3.20.	상정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
				소위 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6. 3.26.)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3.2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

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도서관자료를”로, “납본하여야 한다”를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부수와 납본”을 “부수와 납본·납본 제외”로 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의하여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 구든지 <u>도서관자료(온라인 자 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 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 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를 국립중앙도서관에 <u>납본하여 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u></u></p>	<p>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u>도서관자료를</u>----- ----- ----- ----- -<u>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 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 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 번호를 부여받은 자료</u> 2.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2조에 따라 발간등 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u>고등교육법</u>」 제35조에 따 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 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 된 자료 4. 「<u>출판문화산업 진흥법</u>」 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략)

<신 설>

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의하여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

② -----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
-----부수와 납본·
납본 제외-----

-----.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신 설>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